부산항만공사 공고 제 2022 - 50호

= 해운 · 항만분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=

「2022년 부산항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부산항만공사는 협력중소기업 재직자들의 건강한 휴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**「2022년 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」**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4월 21일

부산항만공사 사장

1. 지원사업 개요

○ **지원내용** : 한국관광공사 「근로자 휴가지원 사업」 가입시 **기업과 재직자 납입금의 일부(기업 10만원, 재직자 10만원) 지원**

○ **공모기간** : **'22. 4. 21. ~ 5. 6. (2주간)**

○ **지원기간** : '22. 5. ~ 10.(6개월간)

[근로자 휴가지원사업(한국관광공사)]

ㅇ 추진목적 :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 국내여행 경비 지원

ㅇ 참여대상 : 중소기업/소상공인 근로자, 비영리민간단체,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등

ㅇ 사업방식 : 여행경비 40만원 적립*하여, 근로자에게 포인트 형태로 지급 후 지정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상품 구입(~2022.10.31.)

* (분담비율) 근로자 20만원(50%) + 기업 10만원(25%) + 정부 10만원(25%)

[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구조]

부산항만공사 **지원 前**	중소기업	+	근로자	+	정부	⇒	근로자
	10만원 (25%)		20만원 (50%)		10만원 (25%)		40만원
▼							
부산항만공사 **지원 後**	BPA	+	BPA / 근로자	+	정부	⇒	근로자
	10만원 (25%)		10만원 (25%) / 10만원 (25%)		10만원 (25%)		40만원

2. 지원대상 및 규모

○ **지원대상**

- 부산 · 경남 소재 해운 · 항만물류업 영위 또는 부산항 이용실적(화물, 여객)이 있는 중소기업

대분류	중분류	소분류
해운업	여객운송업	외항여객운송업, 내항여객운송업, 유람선업, 항만내 여객운송업
	화물운송업	외항화물운송업(해상), 내항화물운송업(해상),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(수출입 및 환적화물 육상 운송)
	대리중개업	해운대리점업, 중개 및 운송주선업, 선박임대업, 선박관리업
항만업	창고업	창고업(신항배후부지), 냉동·냉장창고업, 위험물물품보관업
	하역업	항만하역업,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
	항만부대산업	예선업, 도선업, 검수·검량·검정업, 선박연료공급업, 항만용역업(줄잡이업, 화물고정업 등), 기타 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
	선용품공급업	선용품공급업
	수리업	컨테이너수리업, 선박수리업

○ **참여 제한**

- 국세, BPA 임대료(항만시설사용료 등) **체납기업**
- **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공표*된 기업**

  * 적용기간 : '22.1.1.~12.31.

- 한국관광공사 「근로자 휴가지원 사업」 가입 제한 대상*은 신청불가

  * 해당 기업의 **대표자이거나 임원(법인등기부등본 상) 참여 불가**, 다만 소상공인(중소기업확인서 상)의 경우 대표자와 임원 참여 가능

  ** 상세 가입자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(vacation.visitkorea.or.kr) 참고

○ **지원규모** : **총 75명 (1개사당 최대 5명)**

○ **선정방식** : 서류 적격심사(단, 신청기업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)

- ① 초과시 '21년 ~'22년 4월 신규입사자 비율이 높은 기업
- ② 사업자등록증 상 업력이 낮은 기업 우선(개업년월일이 늦은 기업)

3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○ 신청방법

- 온라인 제출 : 상생누리(www.winwinnuri.or.kr)

⇒ 상생누리 접속 ▶ 동반성장 프로그램 ▶ 프로그램 검색 ▶ 기업명 '부산항만공사' 입력 후 검색 ▶ '부산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' 신청

- 이메일 제출 : yego@busanpa.com

⇒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송부

○ 제출서류

❶ 참가신청서 1부 (붙임1)

❷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❸ 중소기업 확인서 1부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: http://sminfo.mss.go.kr)

❹ 납세증명서(국세완납증명서)

❺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(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: www.4insure.or.kr)

❻ 기업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 1부 (붙임2)

❼ 신청근로자 재직증명서,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 (붙임3) 각 1부

❽ [해당시]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1부

⇒ 사업자등록증 상 항만연관산업을 영위함이 명시되지 않을 시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제출

❾ [해당시] 부산항 이용실적(화물, 여객) 증빙자료 1부

⇒ 지원대상 「부산항 이용실적이 있는 기업」은 아래의 2021년 부산항 이용실적 제출

업종구분	실적 증빙내용
하역사	한국항만물류협회 하역실적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*담당자 : 한국항만물류협회 (02-924-1563)
수출입업체	부산항 수출입실적(신고필증 기준) : 연/월간 단위건수, 중량(kg)
창고업체 및 보세구역운영인	부산항 보세화물(창고) 반출입실적 : 연/월간 단위건수, 중량(kg)
보세운송	부산항 보세운송 건수, 중량(kg)
화물운송주선업	부산항 화물주선(B/L) 건수, 중량(kg) * 적하목록 기준, 수출입 및 환적화물 포함

※ (참고) **부산항 이용 자사실적증명을 위한 관련사이트**

-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(www.trass.or.kr)에 접속하여 수출입 실적정보 교부 신청 → 주문형 무역통계 교부 (담당자 연락처 : 02-2140-0733)

4. 지원사업 추진절차

① 공고・접수 (~'22.5.6.)	② 지원대상 선정 ('22.5.13.)	③ 휴가지원 사업 가입신청 ('22.5.)	④ 포인트 지급 및 사용 ('22.6~10.)	⑤ 지원금 정산지급 ('22.11.)
신청서 제출 (중소기업→BPA)	결과알림 (BPA→중소기업)	신청 및 분담금 납입(중소기업, 재직자→한국관광공사)	휴가# 온라인몰 상품구입* (근로자)	지원금 사용금액 확인 후 지급 (대중소기업협력재단→중소기업→근로자)

* 지급된 적립금 40만원을 사용하여 전용 온라인몰(휴가샵#)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

** 휴가# 사이트 주소 : vacation.visitkorea.or.kr / 전담지원센터 전화번호 : 1670-1330

5. 유의사항

○ **(지원금 정산)** '22년 10월 31일 기준 참여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금액의 50%(최대20만원)를 기업계좌로 일괄 지급

○ **지원금 미지급**

❶ 「근로자 휴가지원사업」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시

❷ 기업 및 근로자가 분담금을 정상납입 하지 않은 경우

❸ 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

❹ 근로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속 재직하지 않은 경우

❺ 기타 「근로자 휴가지원사업」 약관을 벗어난 경우

○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6. 문의처

○ 부산항만공사 ESG경영실 (051-999-8585)

붙임 1.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
2.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.

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.